

한중 FTA체결에 따른 정부의 MRA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TBT 및 적합성평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utilization plan of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for Korea-China FTA:
Focused on TBT and Conformity Assessment

전병호(Jun, Byoung Ho)

서울여자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주저자)

강병구(Kang, Byung Goo)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교신저자)

목 차

I. 서론	V. 요약 및 결론
II. 한중 FTA와 무역상 기술장벽 및 적합성평가	참고문헌
III. 무역상 기술장벽 및 적합성평가 MRA	ABSTRACT
IV. 한중 FTA하에서 정부의 적합성평가 MRA 활용 방안	

국문초록

한국은 경제성장에 있어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로,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비관세 장벽 중 무역상 기술장벽(TBT)의 중요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 양국간 교역에서 기술 장벽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무역상 기술장벽의 제거는 FTA 체결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쟁점 사항 중 하나이다. 상호인정협정(MRA)이 그러한 기술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MRA가 수입 장벽을 완화시켜 주고 국제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가서명된 한중 FTA 체결에 있어서 MRA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는데, 교역량과 양국간 규제의 차이를 고려한 적합한 MRA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MRA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MRA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한국과의 교역량이 큰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MRA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한중 FTA, 무역상기술장벽, 상호인정협정

* 본 논문은 2015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I. 서론

한국-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지난 2012년 5월에 협상을 개시한 이래 33개월 만인 2015년 2월 25일 가서명되면서 한국의 FTA 역사에 또 하나의 큰 획을 그었다. 한중 FTA 타결은 2004년 칠레와 처음으로 FTA를 발효시킨 후 10년 만에 EU, 미국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를 완성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이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주도의 글로벌 경제체제에 본격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중 FTA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거대시장을 우리나라의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하게 되고, 특히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 기회를 확보하고, 중국 자본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향후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끌어 올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여택동 외, 2015).

그러나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허가제, 무역상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생 및 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원산지 규정 등 비관세장벽을 두텁게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표적인 TBT 중 하나가 중국 강제 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인데, 한국 제품이 국제적 인증을 받았더라도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별도의 CCC를 받아야 하는데 6개월~1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번 한중 FTA를 통해 관세 인하 이외에 우리 업계의 중국 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인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중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고, 대중국 시장진입 철폐·완화를 한·중 FTA의 핵심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한국은 각종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무역 및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장치 마련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한국무역협회, 2012).

TBT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통해서 한국에서 받은 인증을 중국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기술의 표준화, 공정의 표준화를 통해 상호간 인정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다(Meconomy, 2015.4.24). 상호인정협정은 규제 상품의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 교역 국가의 TBT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국과의 MRA 추진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강병구 외 2007; 김은숙 외, 2013; 장용준, 2011). 그러나 TBT 해소를 위한 MRA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반면에 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들 연구는 무역상 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MRA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언급이 이뤄질 뿐 구체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상당히 미흡하다.

MRA의 활용성은 EU를 중심으로 활발히 제기되었으나 일본-EU MRA 협정체결의 효과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고 난 이후 MRA의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다. 강병구 외(2007)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EU 상호인정협정의 전기용품 분야에 있어서 EU는 상호인정협정을 활용하여 인증서를 발급한 실적이 없으며, 일본은 동 협정을 이용하여 1개의 적합성평가기관이 37개의 인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일본의 담당 사무관과의 인터뷰에서 제기된 주요 원인 중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일본과 EU의 규제 제도 상이성에 따른 협상에서의 어려움과 협정체결 이후의 적합성평가기관 관리에 따른 비용의 부담이었다¹⁾.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인접국인 중국과의 MRA는 현실적으로 양국 간의 무역장벽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해 볼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하겠다. 먼저 중국과의 상호인정협정의 중요 분야에 있어서의 교역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한국무역협회, 2015) 동 협정의 관리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을 비록 현재 정부로서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협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으며, 특히 한국과 중국은 기본적으로 제3자 인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유사성을 확보하고 있어 협정을 체결하고 구현하는데 드는 비용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가시화된 한중 FTA 협정문에는 TBT(제6장)와 관련하여 명시가 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MRA 활용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 체결에 따른 MRA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즉 대중국 무역원활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MRA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TBT와 적합성평가결과 수용 방법의 개념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TBT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의 MRA의 중요성과 그 유형, 그리고 MRA 관련 기존 연구들을 분석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과 대중국 교역 현황과 규제의 비교를 통해 대중국 FTA 체결에 따라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MRA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전통적 상호인정의 경우 자국이 협정 상대국의 규제체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국내의 인증기관/시험소를 관리해야 하는데 만약 자국이 많은 국가들과 전통적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이에 대한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 상호인정협정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하나의 협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실제로 동 협정을 통한 이익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나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강병구 외(2007), pp.112-113.

II. 한중 FTA와 무역상 기술장벽 및 적합성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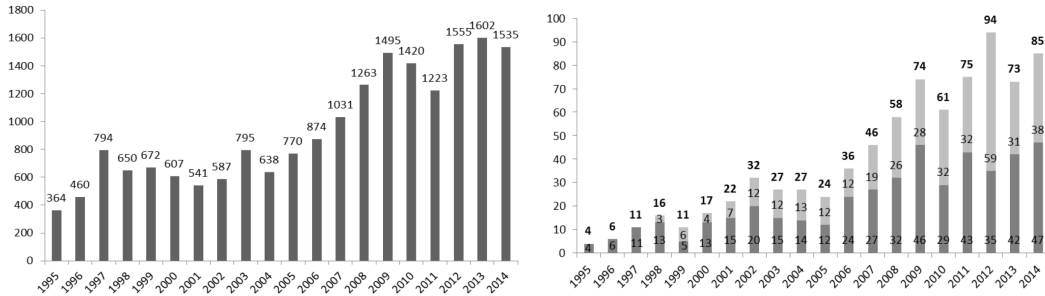
1.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개요

무역의 자유화, 세계화로 관세부과와 수입수량제한 등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은 감축, 철폐되어 가고 있으나,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의 기술장벽 관련 규제가 주요한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다(전병호·강병구, 2007). 일반적인 무역장벽과는 달리 무역의 기술규제는 제품의 생산과정, 선적, 수입국의 통관과정 및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의 사용 및 폐기과정까지 전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는데, 이렇게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무역상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라고 한다. WTO/TBT 협정에서는 이러한 기술규제의 주요 요소로 제품의 특성,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기술기준(technical regulation) 또는 표준(standards) 그리고 특정 제품이 이미 설정된 기술기준과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적합성평가 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기술규제는 각국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 소비자,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지만 일부 규제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김연숙·은용, 2013). 유럽 등의 선진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서민교·김희준, 2012). 특히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인 미국 및 EU 등의 선진국 뿐 아니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 및 동남아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규제도 증가하면서 인증획득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증가로 국내 수출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TBT는 다른 비관세장벽과 달리 매우 복잡한 형태의 기술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지의 여부가 상대적으로 불명확하기 때문에, 인증 및 표준과 같은 기술규제는 소비자의 권익증대와 같은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국제 거래 시 교역 당사국의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WTO/TBT 협정에 따르면 각국의 문화, 지리, 환경적 차이로 발생하는 기술규정이나 표준의 차이를 권리로 인정하고 있어 각국은 기술규제를 보다 효과적인 수입제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4년까지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 건수와 특정무역현안 건수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²⁾.

2) WTO(2015), "Twentieth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G/TBT/36)



자료: WTO

<그림 1> 연도별 TBT 통보문 건수

<그림 2> 연도별 특정무역현안(STC) 건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TBT가 국제통상문제의 중요한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각국이 기술규제를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함을 알 수 있다. 2004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전 세계적으로 경기불황을 경험하였던 1997년, 2003년, 2009년 경우 예년에 비하여 기술규제 도입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점은 경기침체와 기술규제 도입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우려, 즉 TBT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에 대한 장벽을 형성하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장용준, 2014). 특정무역현안 건수의 증가 추세는 각국의 기술규제가 무역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성장에 있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TBT가 과연 우리나라 무역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무역원활화와 적합성평가

모든 정부는 기술기준,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있어서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수출국의 기업들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면에서 국제간 통상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에 있어서 국가 간 규제의 상이성으로 인한 문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역원활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필요한 것이 표준 및 적합성 분야에서는 규제방법의 호환성, 규제와 표준의 일관성, 규제의 투명성, 적절한 규제수준과 수단, 인증에 있어서의 공정성, 시장 감시 방법의 호환성, 적절한 수준의 기술기반구조와 관리구조 등이 있다(강병구, 2011). 이러한 조건들은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 간의 무역원활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이상적

인 조건에 근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이들 이슈와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면 규제협력(regulatory co-operation), 규제의 부합화(harmonization of regulation), 국제기준의 규제(international regulation), 동등성 인정(recognition of equivalence), 표준의 부합화(harmonization of standards), 국제표준화(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program) 등이 있다. 물론 이들 협력방안들이 위의 이슈와 관련하여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고 서로 간에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다. 예를 들어 일치와 규제협력은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방안들이고 국제표준화는 국제적 수준의 규제라든지 인증 등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 중 상호인정협력은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협력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WTO/TBT 위원회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무역원활화를 위한 6개의 적합성평가 방법을 규정하였는데(WTO, 2000), 이중 정부간 상호인정협력을 그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으며 VA(자발적 협력), 인정, UR(일방적 인정)도 넓은 의미의 상호인정협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먼저, 정부간 MRA는 정부가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정제품영역에 대하여 상호인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WTO/TBT 협정문(6.1, 6.3조)에서도 회원국들은 “가능한 한” 제품이 강제적인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교역대상국의 적합성평가절차에 따른 결과를 인정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주체가 되는 상호인정협정과 달리 민간이 주체가 되는 상호인정협정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적합성평가기관 간의 상호인정으로 강제분야가 아닌 민간부분의 자발적 분야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상호인정을 말하는 것으로 그 대표적인 것이 IECEE CB제도이다. 세 번째 인정은 시험기관이나 제품인증기관, 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을 평가하고 그 능력을 보증하는 절차로 시험소 인정, 인증기관 인정, 품질시스템 등록기관 인정 등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제시험소인정협의회(ILAC)이다. 네 번째 정부 지정은 규제당국이 상대국 적합성평가기관의 역량을 판단하여 직접 지정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일방적 인정은 다른 말로 one way MRA 혹은 일방향 MRA라고도 하는데, 이는 매우 독특한 형태의 인정으로 상호인정이 아니라 상대국의 적합성평가결과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급업자 자체선언은 공급업자가 제품이나 공정 혹은 서비스가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표 1> 적합성평가 방법

적합성평가방법	내용
MRAs	특정규제에 대한 정부간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VAs	국내기관과 외국기관과의 자발적 협력 협정(Voluntary Arrangements) - 예: 시험기관간 상호인정약정(MoU), IECEE CB 제도 ³⁾ 등
인정 (Accreditation)	국제적인 인정체계를 통해 적합성평가 기관의 자격 확인 - 예: ILAC(KOLAS, CNAS), IAF 등
GD	정부 지정(Government Designation): 자국 영토 밖에 있는 기관을 지정 - 예: 미국 어린이용품안전관리법, 일본 소비자제품안전법
UR	외국 기관 결과의 일방적 인정(Unilateral Recognition) - 예: WTO/TBT 6.1(동등성 인정에 의한 수출국 시험결과 수용)
SDoC	제조업자/공급자 자체 선언 - 예: 공산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자료: WTO, Second Triennial Review of the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2000)

3. 적합성평가 결과 수용 방법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상호인정협정이 자국의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아래의 표는 다양한 유형의 MRA의 효과에 기존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다양한 국가 및 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기 때문에 비교 가능 및 일반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정부간 MRA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Baller(2007), Chen and Mattoo(2008), Hogan and Hartson(2003)는 경제적 모형을 이용하여 MRA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Peacock et al.(2001), Aldaz-Carroll(2006), Dezseri et al.(2002), Gorzelak and Zolkiewski(2002), Amurgo-Pacheco(2007)는 적합성평가 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질문조사를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Flies and Schonfeld(2006), WTO(2007), Johnson(2008)은 자발적 협력 인정(Voluntary arrangements)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Flies and Schonfeld(2006)는 OECD 회원국의 428개 적합성평가 기구와 110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시험보고서의 자발적 상호 인정은 수출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이러한 자발적 협정의 수용의 정부 수준은 MRA의 대체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WTO(2007)의 연구에서도 IECEE/CB scheme과 같은 비정부 다자간 협력 체제는

3) IECEE CB Scheme(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 :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국제공인 인증제도로써, 통일된 규정(IEC 국제표준)에 따라 발행된 시험성적서를 회원국간 상호수용

다양한 표준과 적합성평가절차로부터 발생하는 행정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Johnson(2008)은 미국의 전기제품 관련 기업 및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접근을 위해 UL(Underwriters Laboratory)은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ttee)의 자발적 표준들에 대해 IECEE에 의해 국가 인증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이 국가 주도의 규제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인정 수준에서의 자발적 협력은 많은 양자간 노력을 줄일 수 있으며, 인정 기구간 협력은 인정된 인증 기구나 시험소에서 발행된 인증서와 시험 결과는 추가적 사항 없이 상대방 국가에서 승인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KPMG(2002)는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국가 도량형 기관들의 사이의 MRA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MRA로 인한 혜택은 ILAC 활동과 관련이 있는 조정과 시험 활동의 승인에 있으며, ILAC(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의 인정 활동은 MRA의 성공의 핵심적 사항이라고 하였다. 즉, 국가 도량형 기관과 ILAC MRA는 정부 규제 당사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WTO(2007)의 연구에서도 ILAC/APLAC(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MRA의 사용은 무역 원활화를 위한 매우 좋은 방법이며, 이러한 비정부간 MRA는 글로벌 표준을 위한 산업계의 요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한편 일본은 WTO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전통적 MRA 보다 정부간 교차 지정에 의한 MRA(cross border designation type MRA)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으며(WTO, 2007), USITC(1998)는 EU-US와 APEC MRA와 같은 MRA가 무역 장벽을 극복하는데 유용하지만, 적합성 평가 기구의 결과의 양자 인정과 같은 규제 접근 방법도 유용하다고 하였다.

MRA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들은 더 부족한 실정이다. 정보통신기기를 대상으로 정량적 분석이 실시되거나(오완근 외, 2005; 이용규, 2014), 주요 국가별 MRA의 경제적 효과가 분석되었다(장용준, 2011).

<표 2> MRA에 대한 기존 연구

구분	연구자
정부간 MRA	Baller(2007), Chen and Mattoo(2008), Hogan and Hartson(2003), Peacock et al.(2001), Aldaz-Carroll(2006), Dezseri et al.(2002), Gorzelak and Zolkiewski(2002), Amurgo-Pacheco(2007), 장용준(2010), 오완근, 윤충한, 임광선(2005), 이용규(2014)
자발적 협력 인정	Flies and Schonfeld(2006), WTO(2007), Johnson(2008)
인정	KPMG(2002), WTO(2007)
정부 지정 및 일방적 인정	WTO(2007), USITC(1998)

이상의 연구들은 MRA의 효과 분석을 통해 무역 원활화를 위해 MRA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MRA가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나 MRA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성 모형을 이용한 연구들을 주로 MRA를 통한 검사 및 인증비용의 절감과 그에 따른 수출입의 가격탄력성을 측정하고 있는데 그 결과의 유의성에 대하여는 재고의 여지가 많다. 먼저 비용 산정에 있어서 계량화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며,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제품의 총 생산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규격의 부합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대국의 규제규격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국의 시험검사소 설비확충이나 인력보강에 대한 비용이 산정되지 않고 있다. 그 외에도 상호인정협정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나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계량화를 통하여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인정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시장진입 장벽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협정 당사국 기업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호인정협정이 한 국가만 유리하고 상대 국가는 불리해지는 것이기보다는 협정당사국들의 무역원활화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어느 유형의 적합성평가결과 활용방법을 선택할지의 결정에는 시장 상황, 제도의 특성, 무역 관계, 규제 동등성 등의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끊임없는 표준의 변화에 따라 적합성평가절차도 영향을 받기에 그러한 동적인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며, 무역의 형태에 따라 적합성평가 수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적합성평가와 자발적 적합성평가에서도 차이가 존재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MRA 필요성에 나아가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MRA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Ⅲ. 무역상 기술장벽 및 적합성평가 MRA

1. MRA의 이해

상호인정협정이란 두 당사국이 각기 다른 기술규제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 상호 협약을 통해 상대방의 기술규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장용준, 2011). 즉,

규제되는 제품의 적합성평가에 대하여 상호인정을 하는 협정이다(강병구, 2011). 상호인정협정을 통하여 수출국은 자국 내에서 수출국의 규제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을 시험하고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국가가 특정제품에 대하여 제3자 강제인증을 요구하고 있을 경우 상호인정협정은 인정받은 수출국의 적합성평가 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시험성적서, 인증 및 승인을 수입국은 인정하고 그 제품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수출 되어서 상대국의 시장에 출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적합성평가 결과의 상호인정은 WTO/TBT 협정문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WTO, 2009). 상호인정협정은 국가 간의 기술규격을 부합화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에 존재하고 있는 규격의 상이함은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하거나 불공정한 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인정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시장진입 장벽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협정당사국 기업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호인정협정이 한 국가만 유리하고 상대 국가는 불리해지는 것이기 보다는 협정 당사국들의 무역원활화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6.1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회원국의 적합관정절차가 자기나라의 절차와 다르다하더라도 회원국이 그러한 절차가 자기나라의 절차와 동등한 적용 가능한 기술규정과 표준과의 적합을 보증한다고 납득하는 경우, 회원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다른 회원국의 적합관정절차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만한 양해에 도달하기 위하여 사전협의를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6.1.1 수출회원국의 관련 적합성기관이 내린 적합관정결과의 지속적인 신뢰성에 대한 확신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기관의 적절하고 지속적인 기술능력, 이와 관련, 국제표준기관에 의하여 발표된 관련지침 또는 권고사항의 준수가 예를 들어 인증을 통하여 입증될 경우 적절한 기술능력이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6.1.2 적합관정결과의 수탁을 수출회원국내의 지정된 기관이 내린 적합관정결과로 국한하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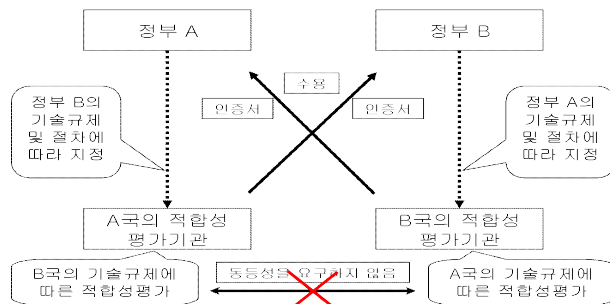
6.3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자의 적합관정절차의 결과를 상호인정하기 위한 협정 체결을 위하여 협상을 개시할 용의를 갖도록 장려한다. 회원국은 이러한 협상이 제1항의 기준을 충족시키며 관련 상품의 무역촉진 잠재력에 대하여 상호 만족을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MRA 유형

상호인정의 협정은 주체별, 적용범위별 기준에 따라 유형을 달리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MRA를 비롯한 시험소 및 인증기구 수준의 다양한 MRA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강병구, 2011). 교역량, 규제 차이, 시험인증 기관의 역량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FTA를 체결함에 있어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의 MRA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전통적 MRA

전통적 정부간 MRA의 형태는 협상체결국의 정부가 자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을 협정상대국의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따라서 지정하고 동 기관에서 발급된 적합성평가결과를 상대국이 수용하는 것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다. 일본-EU가 체결한 협정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부간 MRA 협정이 이러한 형태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전기용품 MRA도 이러한 형태이며 다자간 협정인 APEC-TEL MRA 역시 전통적 MRA의 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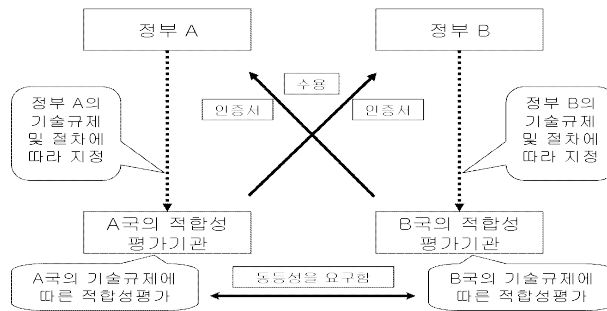


<그림 3> 전통적 MRA의 형태

(2) 동등성 인정에 의한 MRA

동등성 인정에 의한 상호인정협정은 양국이 서로의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 절차가 비록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규제의 목적이거나 적합성평가 절차 수행의 방법이 서로 호환성이 높아서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그림 4>와 같다. 이와 같은 MRA는 상대국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양국 간의 기술기준이나 표준 혹은 적합성평가절차가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만약 양국이 동등성인정을 위하여 기술기준이나 적합성평가절차를 비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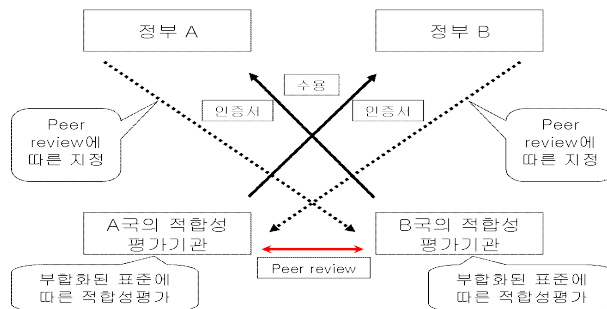
고 하면 그 과정은 매우 길어질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도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양국 간에 기술기준이나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심각한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무척 많은 비용을 수반할 것이다. 현재 동등성인정에 의한 MRA가 체결된 것은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림 4> 동등성인정에 의한 MRA 형태

(3) Peer-review에 의한 M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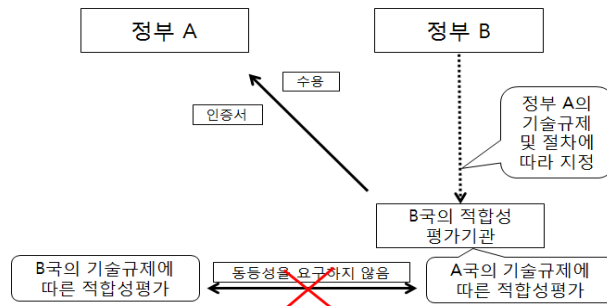
Peer-Review에 의한 상호인정은 참여하는 국가의 기술규제, 적합성평가 절차, 적합성평가 기관 지정기준 등이 서로 부합화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합성평가 기관의 지정은 참여하는 국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집단으로부터 peer review 프로세스를 통과하였을 때 이루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상호인정협정은 IECEE CB Scheme으로 우리나라는 KTL이나 한국 기계전기전자시험 연구원 등이 IECEE CB Scheme에 의해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다.



<그림 5> Peer-Review에 의한 MRA 형태

(4) 일방향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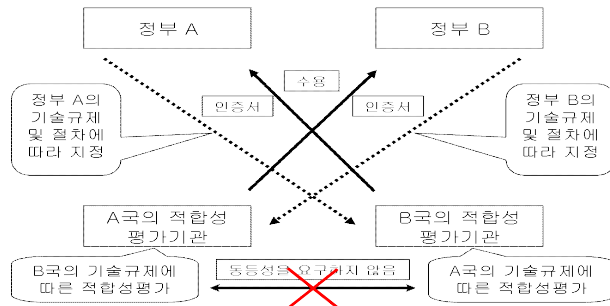
일방향 인정은 일방당사국이 교역상대국의 적합성평가결과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one-way MRA 또는 일방향 MRA라고도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전통적 MRA와 마찬가지로 양국의 기술기준이 동일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일방당사국(A국)이 상대국(B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이 자국(A국)의 적합성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경우 그 결과를 수용하며, 그 반대의 경우를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6> 일방향 인정 형태

(5) 교차지정에 의한 MRA

교차지정에 의한 정부간 상호인정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용이 가능한 TBT 협정문의 조항은 6.4로서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영토 내에 위치한 적합판정기관이 자기 나라 또는 그 밖의 회원국 영토 내에 위치한 기관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자국의 적합판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장려된다”이다.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협정체결국 간의 기술규제나 적합성평가 절차가 동등해야 할 필요는 없게 됨으로서 수출국의 적합성평가는 수입국의 기술규제나 적합성평가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적합성평가 기관을 지정하는 기준도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국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리고 지정행위도 마찬가지로 수출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입국의 규제당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림 7> 교차지정에 의한 MRA의 형태

IV. 한중 FTA하에서의 적합성평가 MRA 활용 방안

1. 한중 교역 동향 및 특징

중국을 우리나라 최대 교역대상국이다. 1992년 8월 수교 당시 63억 7,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교역액은 2014년에는 2,354억 달러로 무려 37배 규모로 급성장하였다. 중국은 2003년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대상국이 되었으며, 2004년 이후부터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2007년부터는 수입에서도 일본을 제치고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자리잡았다.

<표 3> 대중 교역량 비중

(단위: 억불)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교역량	6,349	7,283	8,573	6,866	8,916	10,796	10,676	10,752	10,987
대중국 교역량	1,181	1,450	1,683	1,409	1,884	2,206	2,152	2,288	2,354
비중	18.6%	19.9%	19.6%	20.5%	21.1%	20.4%	20.2%	21.3%	21.4%

자료: 한중 FTA 해설서, 한국무역협회(2015)

주요 수출입 품목으로는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 등의 전기전자 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및 자동차도 20대 수출품에 포함되고

있다. 2014년 현재 생활용품의 대중 교역은 전체 교역 중 41.4%에 달하고 있으며, 전자전기도 39.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2015). 상호인정협정은 협정체결국간의 교역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그에 대한 인증건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크다(강병구, 2011). 따라서 중국과의 MRA 체결 시 이러한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중국의 MRA 체결 현황

한국과 중국은 TBT와 관련하여 매우 상이한 FTA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적용 범위 및 방식과 관련하여 중국은 대체로 원칙을 규정하는데 머무르는 반면 한국은 협력강화, 적합성 평가결과 수용 메커니즘에 대한 상호 인식, WTO 관련 권고 적용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정환후, 2012). 특히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대한 경우 한국 모든 FTA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중국은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다.

중국은 일부 복수국간 MRA 협정(예: MRA on Calibration and Testing laboratory Accreditation Procedures, 2001년 발효)에 가입하였으나, 구체적인 품목이 명시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높은 MRA 협정에 가입한 경우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장용준, 2010). 단, 중국은 뉴질랜드와의 FTA 협정(2008.10 발효)에서 MRA를 포함시켰는데, 정식 명칭은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Components(EEE MRA)이다.

EEE MRA의 대상품목은 중국의 CCC 인증제도에 포함되어있는 전기전자제품 및 뉴질랜드의 공급자선언에 해당되는 전기전자제품이다. 본 협정은 양국 간 기술장벽을 일정부분 해소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에 관한 언어장벽까지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2009년 12월에는 자동차용 전기 작동 장치(Electric motor soft starters), 고급 오디오 증폭기 등 오디오 용품 등 2개 품목이 추가되었다.

뉴질랜드-중국 MRA는 기존의 일반적 MRA와 달리 뉴질랜드는 전기용품과 EMC에 있어서 SDoC를 도입하고 있으며 중국은 제3자 강제인증을 도입하고 있어 중국의 수출업자가 뉴질랜드에 수출을 할 경우 CCC 마크를 획득해야 하며 또한 해당제품에 있어서 중국의 규격이 뉴질랜드와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뉴질랜드의 수입업자는 해당제품을 뉴질랜드에 유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SDoC 관련 문서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반면 뉴질랜드의 수출업자가 중국에 수출을 할 경우에는 뉴질랜드의 적합성평가기관이 CCC 마크를 발급해 주도록 하고 있다.

<표 10> 중국-뉴질랜드 MRA 협정문 분석

분야	내용
(지역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되어서 직접 양 당사국에 위탁된 협정문에 명시된 제품과 관련된 규제행위와 적합성평가활동에 한함
제품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품목을 Schedule A.1 및 A.2에 구체적으로 명기
특수한 용어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CCC인증”은 동 협정에서 커버하는 제품이 CCC구현규칙(implementation rules)과 뉴질랜드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차이(deviation)에도 적합하다는 것을 인증하는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함 CCC구현규칙은 중국의 책임당국이 공표한 적합성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과 동 규칙에 대한 수정 등을 정한 기존의 CCC구현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동 협정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제품관련 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에서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과 관련된 중국표준 및 뉴질랜드 당국이 요구하는 표준과의 차이를 제품표준정보를 제공하는 ScheduleA.1에 명기하도록 하고 있음. 뉴질랜드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 관련 중국표준이 인용하고 있는 IEC/ITU표준 및 중국당국이 요구하는 표준과의 차이를 제품정보를 제공하는 ScheduleA.2에 명기하도록 하고 있음
적합성평가 기관에 대한 추천 및 승인 혹은 지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소와 인증기관을 추천하고 승인(accepting)하거나 지정과 관련된 요건은 별도로 부속서에 명기하고 있으며, 이는 제3자 기관으로서의 일반적 인정요구사항과 큰 차이가 없음
추천 및 승인 혹은 지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질랜드당국은 중국의 관련당국에 자국의 적합성평가 기관을 추천하면 중국당국은 승인을 해야 하며, 중국당국은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하여 뉴질랜드 contact point에 통보(advise)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음
적합성평가 활동 결과의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합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양국의 영토 내에서 조립된 제품으로 한하고 있으나 부품이 외국에서 제조된 경우 양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이 해당강제규정과 적합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이것도 또한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음. 뉴질랜드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할 경우 뉴질랜드인증기관은 동 협정에 따른 CCC인증절차에 따르면 됨. 반면 중국에서 뉴질랜드로 수출을 할 경우 CCC인증을 받고 ScheduleA.1에 따라 승인이 되어 CCC마크를 부착한 경우 뉴질랜드의 전기용품 안전관련 SDoC에 필요한 문서로서 인정이 되고 뉴질랜드의 수입업자는 EMC와 관련된 SDoC요구사항을 면제받으며 뉴질랜드 EMC적합마크부착의무를 면제받음.
마크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에서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경우 동 협정의 규정에 따라 CCC인증을 받은 자는 CCC마크센터에서 CCC마크와 뉴질랜드마크를 신청할 수 있음. 뉴질랜드에서 중국으로 수출 할 경우 동 협정의 규정에 따라 CCC인증을 받은 자는 승인된 인증기관에 CCC마크를 신청할 수 있음.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간 TBT 협력의 효과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009.

3. 대중국 MRA 활용 방안

MRA는 무역원활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규제에 대한 적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MRA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MRA의 방법과 구현에 있어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국기업이 중국으로 중간재 등을 수출해 현지 생산한 후 중국 내수로 공급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한·중간 분업구조가 형성돼 있음을 볼 때 MRA 체결은 한·중 FTA의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정환우, 2012). 다만, 중국의 실제 인증절차나 기법이 국제 수준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음을 감안하여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전면적인 MRA 보다는 일부 분야에서 시범적인 MRA를 달성한 뒤 점차 이를 확대시켜 가는, 점진적 확대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1) 주요 품목별 MRA 활용방안

MRA의 적용 대상은 교역량, 기술규제의 수준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중국 교역량과 정부 및 기업의 주요 관심사를 고려하여 전기용품, 자동차 및 부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을 대상으로 대중국 MRA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 정부는 한중 FTA 체결에 있어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대중국 주요 수출품인 전기용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화장품 분야의 MRA를 우선 추진을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5).

품목별 MRA 활용을 위해서는 대상 제품의 규제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품목들에 대한 양국간 규제를 비교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화장품과 의료기기는 행정 등록의 방식으로 한국과 중국의 제도가 유사하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 한국은 자기인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중국의 3자 강제인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용품의 경우에도 한국은 제품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자기인증의 다양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중국은 강제인증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의 차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MRA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의료기기와 화장품의 경우 양국 규제 시스템이 유사하므로 전통적 MRA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통적 형태의 MRA는 체결국 간에 기술발전 단계 및 규제시스템의 역량이 거의 동등하여 상대방 기술규제 및 요건을 충족시킬 있는 적합성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경우 바람직하다(김연숙·은웅, 2013). MRA 체결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 체결을 위한 당사자간 현 제도를 어느 정도 바꿔야 하는지와 향후 MRA 협정을 위한 관리 비용이다(강병

구 외, 2007). 의료기기와 화장품의 경우 한국과 중국 양국의 제도가 유사하기 때문에 전통적 MRA 체결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부실 시험 및 인증 시 해당 기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전기용품과 자동차는 양국간 제도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차지정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중국정부는 우리나라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우리나라는 중국의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 때 우리나라의 시험기관은 중국의 CCC 규정에 따른 시험을 하고, 중국의 시험기관은 중국의 CCC 규정과 더불어 중국과 우리나라 간 차이나 나는 규정을 시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차지정은 협정체결국 간의 기술기준이나 적합성평가 절차가 동등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전통적 MRA와 비교하여 관리비용과 구현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장점을 지닌다. 추후 우리나라의 시험기관이 중국에 진출하는 경우 이들 기관을 정부가 지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교차지정 방식을 추진할 때 중국-뉴질랜드 MRA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일반적 MRA와 달리 뉴질랜드는 전기용품과 EMC에 있어서 SDoC를 도입하고 있으며 중국은 제3자 강제인증을 도입하고 있어 중국의 수출업자가 뉴질랜드에 수출을 할 경우 CCC마크를 획득해야 하며 또한 해당제품에 있어서 중국의 규격이 뉴질랜드와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뉴질랜드의 수입업자는 해당제품을 뉴질랜드에 유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SDoC관련 문서를 별도로 준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반면 뉴질랜드의 수출업자가 중국에 수출을 할 경우에는 뉴질랜드의 적합성평가기관이 CCC마크를 발급해 주도록 하고 있다.

<표 11> 한국 및 중국의 주요품목 인증제도 비교

	한국	중국
자동차 및 부품	자기인증(자사에서 제품시험)	CCC인증(제품시험+공장심사)
전기용품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SDoC	CCC인증(제품시험+공장심사)
화장품	화장품제조 허가 및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	등록(일반용) 및 허가제(특수용)
의료기기	의료기기인허가	의료기기행정허가

자료: 각국 해당품목 규제 및 인증제도 현황을 재정리(CCIC KOREA, 해외인증정보 시스템-<http://cic.ktl.re.kr>)

(2) 기타 대중국 MRA 활용시 고려 사항

이상으로 대중국 주요 교역 품목인 전기용품, 자동차, 화장품 및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MRA 활용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그 외 한중 MRA를 체결함에 있어 기타 고려할 수 있는 요

인들이 있다. 우선 다자간 자율인증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간 상호인정협정은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상당한 비용을 수반한다. 협정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협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협정이 체결된 이후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가 매우 다양한 국가와 많은 품목에 있어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들 국가의 제도를 모두 다 관리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반면 자율인증분야는 민간의 수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들의 상호인정은 대부분 peer review에 의하여 상호인정협정에 참여하는 시험소나 인증기관의 역량을 검증하고 있다. 이들 자율분야의 상호인정은 ISO, IEC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으며 이들의 성적서 발급실적은 정부 간 상호인정에서 발급하는 성적서나 인증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의 경우 민간분야의 상호인정협정이 해당정부로부터 인정을 받는 경우 민간분야의 상호인정협정을 더욱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CB Scheme이다(강병구 외, 2007). 그러나 이러한 민간분야의 상호인정협정의 확대는 시험소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비록 우리나라의 시험소들이 민간분야 상호인정협정에 가입하고 있어도 수입업자가 우리나라 시험소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신인도를 확보하고 있는 외국시험소의 성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우리나라 시험소의 신인도가 국제적으로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시험소와 함께 시험소의 국제적 신인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장기적 전략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험소 및 인증기관에 대한 내국민대우의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 중국 정부는 시험소 설립시 강제인증제도 업무에 대해서는 외국기관에 시험소 허가를 주지 않고 있으며 제3국 인증 및 외국인증을 위한 업무에도 허가제로 운영하여 한국기관이 중국현지에서 기업을 지원하는데 장애요소가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내국민대우 적용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의 경우에도 적합성평가 기관 인정시 내국민 대우 조항(제9.5조 제3항)을 적용하고 있는데, 각 당사국이 상대국 영역의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 또는 승인하거나 면허를 부여하거나 달리 인정하는 경우, 자국영역의 적합성 평가기관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도록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가서명된 FTA 협정문에는 내국민대우와 다자간자율인정 제도 활용이 명시되어 있다. 자율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내국민대우(6.6.3항)⁴⁾를 규정함으로써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

4) “각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절차가 자국을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의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의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서 준비, 채택 및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한 적합성평가절차의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기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충족시켜야 하는 적합성평가와 관련하여 양국은 국제공인 시험성적서(IECEE CB Scheme) 상호 수용을 촉진(6.8.5항)⁵⁾키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시험인증규제 최신 동향을 신속하게 입수하여 기업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최근 TBT 대응 관련 기업 대상 조사에 따르면, 특히 중소기업들은 교역 당국의 인증 및 규제 정보에 대한 정보 입수에 가장 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BT 대응 관련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강병구 외, 2014). 상호인정협정에 대한 실수요자인 수출입업계가 빠르게 변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되면 상호인정협정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많은 적합성평가기관들은 국내 및 세계인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할 것이다(김연숙·은웅, 2013).

V. 요약 및 결론

여러 비관세조치들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TBT 문제의 효율적인 대응은 우리나라 수출에 현저한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다. 기술규제는 특성상 측정의 불확실성, 계량화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시장진입 장벽이 높아져 수출기업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김태형·황성분, 2013, 남상열, 2005). 이러한 TBT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상호인정이 부각이 되면서 EU, 미국 등을 중심으로 상호인정협정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FTA 체결국을 중심으로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고 있다(김연숙·은웅; 2013; 장용준 외, 2010; Meconomy, 2015.4.24).

2014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1,325,250억불 중 3,532,064억불로 11.3%를 차지하여 1위를 기록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2015). 또한 중국은 2014년 현재 총 1,115건의 기술규제를 WTO에 통보하였는데 이는 전체 회원국 중 4번째 해당한다(국가

5) “양 당사국은 중복적인 시험 및 인증 요건을 줄이기 위하여 자국의 국가 인증기관이 IECEE-CB scheme의 회원이 되도록 하고 그 국가 인증기관이 전기안전 요건에 대한 국가 인증의 기초로 서로의 IECEE-CB 시험 인증서를 수용하도록 장려한다.”

기술표준원, 2015). 이처럼 우리나라 총 교역에서 비중이 높고 기술규제의 신설 및 개정 활동에도 적극적임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TBT 문제 해결을 위한 MRA 협정은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가서명된 한·중 FTA 협정문에는 TBT 조항은 마련되어 있으나 상호인정에 대한 내용은 아직 언급 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적합성평가결과의 상호인정에 대해 모든 FTA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중국은 12개의 기체결 FTA 중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만 MRA를 수용하고 있다. MRA 체결은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중 FTA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므로 중국에 대해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상호인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정환우, 2012). 그러나 중국이 기존 FTA 협상에서 MRA를 수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으므로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TBT와 관련 MRA 체결은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핵심 사안이므로 양국의 산업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면적 MRA 보다는 일부 분야의 수용을 합의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적 방안이 필요하다(백은영,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는 전기용품, 자동차 및 부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품을 대상으로 대 중국 MRA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TBT, 적합성평가결과 수용 및 MRA 관련한 기존 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MRA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으며, 중국과의 교역량 및 제도의 비교를 통해 각 분야에 적합한 MRA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이 결정이 되면 정부기관 및 시험인증 기관의 역할 및 예산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자간자율협정의 활용과 내국민 대우, 그리고 TBT 정보 제공 체계의 마련 등 효과적인 대중국 MRA 활용을 위한 방법들을 기타 방법들도 모색해 보았다.

한·중 FTA 체결에 따라 양국간 교역의 증대는 국가간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키고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에 대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TBT는 수출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무역원활화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지극히 중요한 이슈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노력 중에서 기술장벽을 우회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 중 상호인정협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무역원활화를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 접근방안에 대한 연구도 또한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TB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MRA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MRA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 국가가 아닌 전체를 대상으로 MRA의 필요성과 일반적인 효과를 분석하거나, MRA 체결국간의 제도 비교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FTA 체결에 따른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MRA 활용

방안을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그 차별적인 의의가 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MRA 협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병구, “규제협력으로 상호인정협정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표준과 표준화연구, 제1권 제 1호, 2011, pp. 7-19.
- 강병구, 전병호, 김재영, “한미, 한EU FTA/TBT 협정에 따른 이행 및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 국가기술표준원 연구용역, 2014.
- 강병구, 전병호, 한필구,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간 TBT 협력의 효과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국가기술표준원 연구용역, 2009.
- 강병구, 전병호, 한필구, 김경미, 이주형, 유영신, “상호인정협정의 효과분석 및 향후 정책방향 연구”, 한국산업기술재단 연구용역, 2007.
- 국가기술표준원, “2014년 무역기술장벽 보고서”, 2015.
- 김연숙, 은웅,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상호인정협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9권 제1호, 2013, pp.217-236.
- 김태형, 황성분, “한중 FTA 체결과 무역살기술장벽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9권 제6호, 2013, pp.169-190.
- 남상열, “무역상 기술장벽 분야의 WTO 논의동향과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백은영, “한중 FTA에 대비한 한중 기술무역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3호, 2012, pp.381-403
-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 보도자료, 2015.
- 서민교, 김희준, “한중 FTA의 무역기술장벽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4호, 2012, pp.491-516.
- 여택동, 정군우, “한중 FTA가 대구경북 지역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통상정보연구」, 제17권 제1호, 2015. pp.309-337.
- 오완근 외, “IT 부문 MR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연구」, 제9권 제2호, 2005, pp.85-117.
- 이용규, “정보통신부문에서의 국가가 상호인정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한-미 간 협정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제28권 제3호, pp.1-26.

- 장용준, 김정곤, 남호선, “주요 교역국별 상호인정협정의 효과 및 전략적 접근방법 연구”, 국가기술표준원 연구용역, 2010.
- 장용준, “주요 교역국별 상호인정협정 추진전략 조사연구”, 국가기술표준원 연구용역, 2011.
- 장용준, 서정민, “무역상 기술장벽이 한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국제통상연구」, 제19권 제1호, 2014, pp.1-33.
- 전병호, 강병구, “표준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의 경제적 효과 및 대응방안”, 「경상논집」, 제30권 제1호, 2007, pp.19-40.
- 정환우, “한중 FTA 비관세장벽 분야 쟁점과 시사점,” 「Trade Focus」, 제11권 제24호, 2012, pp.1-33.
- 한중 FTA 협정문
- 한중 FTA 협정문 해설서
- TBT 중앙사무국, “WTO/TBT 업무 매뉴얼”, 2009.
- Aldaz-Carroll, E., “Regional Approaches to better standards systems”, World Bank Research Policy Working Paper 3948, 2006.
- Amurgo-Pacheco, 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and trade diversion: Consequences for developing countries”, HEI Working Papers 012-2007, Economics Section,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Geneva, 2007.
- Baller, S., “Trade effects of regional standards liberalization: A heterogeneous firms approach”, World Bank Policy Working Paper 4124, 2007.
- Chen, M. and A. Mattoo, “Regionalism in standards: Good or bad for trad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 41(3), 2008, pp.838-863.
- Dészéri, K., Éltető, A. and S. Meisel, “Technical barriers to trade: Hungarian exports to the European Union”, chapter 7 in Brenton, P. and S. Manzocchi (eds.). Enlargement, Trade and Investment: The Impact of Barriers to Trade in Europe. Cheltenham, UK: Edward Elgar, 2002.
- Fliess, B. and R. Schonfeld, “Trends in conformity assessment practices and barriers to trade: Final report on survey of CABs and exporters” OECD Trade Policy Working Paper No. 37, Paris: OECD, 2006.
- Gorzela, M. and Z. Żółkiewski, “The perception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of manufacturing enterprises in Poland”, chapter 8 in Brenton, P. and S. Manzocchi (eds.). Enlargement, Trade and Investment: The Impact of Barriers to Trade in Europe. Cheltenham, UK: Edward Elgar, 2002.

Hogan & Hartson LLP, “The economic impact of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on conformity assessment: a review of the costs, benefits and trade effects resulting from the European Community’s MRAs negotiated with Australia and New Zealand”, prepared under contract for the European Commission, 2003.

KPMG, “Potential Impact of the CIPM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Final Report submitted to BIPM Sevres, France, 2002.

Johnson, C., “Technical barriers to trade: Reducing the impact of conformity assessment measures”,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Office of Industries Working Paper No. ID-19, 2008.

Peacock, S., Mortimer, D., Harris, A., Carter, R. and J. Richardson, “An economic analysis of proposed changes to the conformity assessment of medical devices”, Centre for Health Program Evaluation, Technical Report 15, Australia, 2001.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Global Assessment of standards barriers to trade in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Paper prepared for the Working party of the Trade Committee, Washington D.C., 1998.

WTO, “A case study to clarify effectiveness of MRAs”, Report prepared for the WTO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Submission by Japan, G/TBT/W/276, March 19, Geneva, 2007.

WTO, “Japan’s Experience of concerning cross-border designation systems”, Submission by Japan, G/TBT/W/277, July 10, Geneva, 2007.

WTO, “Twentieth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G/TBT/36, 2015.

WTO, “Second Triennial Review of the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G/TBT/9, 2010.

<http://www.fta.go.kr/cn>

<http://www.m-economynews.com>

<http://stat.kita.net/stat/istat>

<http://www.ccickorea.com>

ABSTRACT

A Study on the utilization plan of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for Korea-China FTA: Focused on TBT and Conformity Assessment

Jun, Byoung Ho* · Kang, Byung Goo**

Korea-China FTA was initialized in 2015. Korea has a high level of dependence on trade for its economic growth, especially to China.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among various non-tariff barriers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Elimination of TBT is one of the key issues in whic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interested since technical barriers significantly affect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MRA has been considered as an effective tool to relieve such technical barriers. Several studies and surveys showed that MRA would mitigate the barriers of import and solve the problems that many companies face in international market.

This study tries to seek utilization plan of MRA for Korea-China FTA. It suggests suitable utilization plan of MRA considering the difference of technical regu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This paper has value in that it provides specific MRA strategies targeting China while other prior studies have merely analyzed the necessity of MRA.

Key Words : Korea-China FTA,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Mutual Recognition Agreement(MRA)

* Assistant Professor, Seoul Women's University(First Author)

** Professor, Korea University(Corresponding Author)